

| | |
|--------------|----------------|
| 의안번호 | 제 78 호 |
| 의 결 연 월 일 | 년 월 일 (제 회)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제출연월일 | 2014년 11월 10일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78 호

제출연월일 : 2014년 11월 10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대학 교사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반도체전자과 강의실, 실험·실습실을 학생생활관(기숙사) 1개 층(2층)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 발생하는 기숙사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 공동강의실, 동아리실 등 학생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사시설을 증축(미래관 3~4층)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북도립대학 교사시설 증축》

- 위 치 : 충북도립대학 미래관(옥천읍 금구리 40외 9필지)
- 사업기간 : 2015. 2 ~ 2017. 2
- 증축규모 : 2개층, 연면적 2,000㎡(바닥면적 1,000㎡)
- 사 업 비 : 4,000백만원(㎡당 2백만원)
- 연도별 투자금액
 - 2015년 : 1,000백만원(실시설계 및 착공)
 - 2016년 : 3,000백만원(지상 3~4층 공사, 내부마감 공사)
- 주요시설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15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 구 분 | | 당 초 | | | 변 경 | | | 합 계 | | | |
|-----|----|-----|-----|----------|-----------|-----|-------|-----------|-----|----------|-----------|
| | | 건수 | 면 적 | 금 액 | 건수 | 면 적 | 금 액 | 건수 | 면 적 | 금 액 | |
| 취득 | 계 | 토지 | 1 | 63,391.5 | 9,913,163 | | | | 1 | 63,391.5 | 9,913,163 |
| | | 건물 | | | | 1 | 2,000 | 4,000,000 | 1 | 2,000 | 4,000,000 |
| | | 기타 | | | | | | | | | |
| | 매입 | 토지 | 1 | 63,391.5 | 9,913,163 | | | | 1 | 63,391.5 | 9,913,163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교환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기타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1 | 2,000 | 4,000,000 | 1 | 2,000 | 4,000,000 |
| | | 기타 | | | | | | | | | |
| 분 | 계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매각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양여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교환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기타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 일련 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 득 시 기 | 취 득 사 유 | 취득재산 전소유자 | 비고 |
|----------|---------|-----------------------------------|-------|-----------|---------|---------|--------------|----|
| | 지목 | 소 재 지 | 면 적 | | | | | |
| 계 | 토지 | | | | | | | |
| | 건물 | 1건 | 2,000 | 4,000,000 | | | | |
| | 기타 | | | | | | | |
| 1 | 토지 | | | | | | | |
| | 건물 |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0 외 9(충북도립대학 미래관) | 2,000 | 4,000,000 | '17. 2 | 교사시설 확충 | - | 증축 |
| | 기타 | | | | | | | |
| 2 | 토지 | | 이 | 하 | 여 | 백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3 | 토지 | | | | |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4 | 토지 | | | | |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5 | 토지 | | | | |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
|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 style="margin-left: 20px;">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 style="margin-left: 20px;">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p> <p style="margin-left: 20px;">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 style="margin-left: 20px;">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
|---|--|
|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